

#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

## 1

### 회의개요

- 일시: 2019. 04. 11.(목), 17:00-18:30
-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
- 출석이사: 재적이사 20명 중 12명 참석
  - 회장(의장): 유준상
  - 부회장: 박진우
  - 이 사: 김미향, 김용호, 김종필, 김태정, 김희상, 심영식, 유재훈, 유정인, 이광수, 임진영
- 상정안건
  - 보고사항
    - 1.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결과
    - 2. 이필성 前부회장의 징계 무효 소송 결과
  - 전차회의록 초록
    - 1.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 심의사항
    - 1. 회장 업무 인수위원회 구성
    - 2. 국가대표 470종목 외국인코치 초청 훈련계획 승인
    - 3. 임원 보선
    - 4.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 기타사항

## 2

### 논의결과(주요내용)

#### I. 보고사항

##### 1.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결과

###### 가. 주요내용

- 1) 유준상 회장 당선자의 회장지위확인 가처분 결과
  - 채권자: 유준상
  - 채무자: 1) 대한체육회장, 2)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신청일: 2018.2.12.
  -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항소심 채권자(대한체육회)에 대한 인준의사표시 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결론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체육회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849)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체육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대한체육회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나. 논의 결론 : 원안 접수

2. 이필성 前부회장의 징계 무효 소송 결과

가. 주요내용

1) 소송 경위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필성 前부회장에 대한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할 사항을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하달함. (조치할 사항은 “중징계 조치”)(2016.06.02.접수)
- 대한요트협회 2017-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17.8.22.)는 “견책”을 결정하여 통보함.(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견책”은 경징계임.)
- 2017년 대한민국 국회 정기국정감사에서 ‘징계 기준을 위반한 징계 처분’으로 지적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해당 건 재심의 통보함. (2017.11.16.접수)
- 당시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원 사임서 제출하여 해촉하고, 보선함. (근거: 2018년 제2차이사회 보고사항 3호(2018.2.27.개최))
- 2018-2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18.5.31.) 심의사항 제1호 「공금횡령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건 재심 건」으로 이필성 前부회장에게 자격정지1년의 징계 결정.
- 징계당사자인 이필성 前부회장은 대한체육회로 이의신청함. (이의신청 결과: 기각)

- 대한요트협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효력정지」가 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접수 함.

2)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결과

- 원 고: 이필성
- 피 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접수일: 2018.7.09.
- 청구취지 (주문)
  1. 피고가 2018.06.07.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내용
  - 판결 선고일: 2019.3.21.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최종 처분 징계

- 견책 (근거: 2017-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2017.8.22.) 결과)

나. 논의 결론 : 원안 접수

## II. 전차회의록 초록

### 1.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가. 주요내용 : 사회자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 보고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회장의 재판을 진행해왔던 성심법무법인 강수림 변호사로부터 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심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강수림 변호사에게 예산을 재심의할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문 요청함.
- 강수림 변호사: 유준상 회장 대한요트협회 회장이라고 확정이 되었음. 회장이 권한을 행사해야하는데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직무대행은 법원에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회장 집행 정지를 시켜 놓고 변호사가 나와서 직무대행을 해야지 재판중에는 정관 규정가지고 할 일이 아님. 따라서 대한체육회에서 직무대행을 인정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사료됨. 재판에서 회장이 확정됐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회를 소집했으니까 소집권자가 아님. 따라서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함. 기존 이사님들도 체면이 서야하고 회장님도 체면에 서야하는 문제니까

예산 수정안을 내주고 회장님 뜻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수정하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을 회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 박진우 부회장: 지난번의 이사회가 모두 다 무효라고 한다면 대표팀 지도자 승인한 것도 모두 불법이 되지 않느냐는 점과 직무대행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3월 29일자 판결문인데 이사회를 한 것이 3월 12일이므로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한 것으로 시차가 있는 점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함.
- 강수림 변호사: 첫 번째 판결에서 대한요트협회가 항소를 안했기 때문에 요트협회는 회장이 확정되었음. 따라서 내부적으로 법적으로는 회장님이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음. 이사회에서 지도자를 승인한 것은 사실행위이므로 제가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함. 법률 행위에 중에서는 이사회 소집권에 대한 문제로 이미 처리한 것들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이므로 누가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의장: 회장인 제가 책임 하에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예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해주시고 이것을 받겠다는 뜻임.

**다. 논의 결론 : 예산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접수**

### III. 심의사항

#### 1.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 구성

##### 가. 주요내용

- 의장의 부연설명과 함께 안건 상정함.  
(부연설명: 업무 인계위원회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임시회장이기 때문에. 인수라는 건 회장이 완전히 됐을 때 100%. 지금은 한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위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 구성의 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이것은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 회장들이 되면 반드시 인수인계위원회가 구성됨.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혼자 앉아서 인수받아서 그 회를 끌고 갈수 없을 것임. 요트협회가 그간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진단해보고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하고. 회계 부분도 실제 어떻게 집행이 돼서 갔는지 또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회장이 다 할 수 없으니 요트협회의 소위 체육인,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 법률적으로 이해가 깊은 사람, 회계를 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인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히 정리할 필요 있음.

- 박진우 부회장: 옥상옥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할거 같고, 최소한 기간을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정해 놓고 추가가 필요하다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추가하였으며 좋겠음.

**나. 논의 결론**

- 인계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활동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2. 국가대표 470종목 외국인코치 초청 훈련계획 승인**

**가. 주요내용**

**1) 배경**

- 470종목 국내 지도자 부재 상황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 선임이 시급하고, 얼마 남지 않은 470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출전권 배정)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470종목 선수들을 지도할 코치가 필요함.
- 2019-2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19.03.25.서면결의)지도자 승인 의결함.

**2) 훈련 개요 및 코치 소개**

- 대한체육회 지원 승인 내용

구분	기간	수당	항공료	비고
2019년도 국가대표 외국인코치초청	4개월	최대 \$6,000/월 (15일 이상 훈련 진행 시)	왕복 1회 (1,800,000원)	최소 3개월 이상 지도 조건

- 훈련개요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총 4개월	부산 수영만(예정)	470 종목 국가대표 선수단

※ 세부 훈련 일정은 외국인코치와 협의 후 진행예정.

- 초청외국인 코치

사진	기본정보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Joonas Lindgren (요나스 린드그렌)</li> <li>- 국적: 핀란드</li> <li>- 성별: 남</li> <li>- 생년월일: 1986. 5. 31.</li> <li>- WS Sailor ID: FINJL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70종목 세계랭킹 6위 (2012년)</li> <li>- 2018 싱가포르 세일링팀 470코치, 6개월간</li> <li>- 2012 충남요트팀 470 코치, 3주간</li> <li>- 2009 주니어월드 미국팀 470코치</li> <li>- 2008 주니어월드 핀란드팀 470코치</li> <li>- 2000~2005 헬싱키 클럽 옵티미스트 코치</li> </ul>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김태정 이사: 외국인코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외국인코치와 우리 선수들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코치를 바꿀 수 있는 상황 대비 필요.

다.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임원 보선

가. 주요내용

- 최초 선임된 임원 수는 29명(회장1, 부회장3, 이사23, 감사2)으로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최대 총원가능 인원은 2명이며, 사임한 7명의 결원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음. (정관 제22조 제5항.)

나. 참석자 주요발언

- 김용호 이사: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원된 부분에서는 회장님께 위임을 해서 회장이 정하고 규정에 의해서 임원 보선을 하는 게 합당해 보임.
- 유정인 이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가 20%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대표 경력자인 강왈수 이사와 이동우 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여 선임하면 문제가 없음.

다. 논의 결론 : 회장이 추천한 6명 (성심종합법무법이 대표변호사 강수립, 위니스건설 회장 주봉노, 전북요트협회 전무이사 김총희, 가천대 교수 박종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정진우,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재호)과 회장이 추가로 추천하는 1명을 보선하되 총회에서 선임하는 인원까지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 요건에 맞도록 하고 부회장 및 이사 직위는 추후 회장이 결정함.

(계속)

## 4.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 가. 주요내용

○ 2019년도 예산 요약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승인)

세 입			세 출	
관	항	금 액	관	금 액
자 체 ₩340,450,502	찬조금	194,0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398,991,050
	기금과실금	73,096,332	후보선수육성	197,516,700
	자체수입	73,354,170	청소년대표육성	186,651,500
국민체육 진흥기금 (대한체육회) ₩2,144,844,320	국가대표강화훈련	1,225,613,800	국제체육교류	24,197,380
	후보선수육성	191,902,100	학교체육활성화	152,100,000
	청소년대표육성	186,051,500	생활체육활성화	4,500,000
	국제체육교류	5,186,400	전국&국제대회개최	275,640,000
	학교체육활성화	152,0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종합대회지원	20,070,000	전문인력양성	27,7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회의개최	16,280,000
	체육지도자	1,200,000	인건비	210,082,000
	경기력향상비	172,000,000	운영비	80,488,607
	회원종목단체지원	149,020,920	2018년 미지급금	74,207,985
보조금 ₩204,860,000	대회지원금	204,860,000		
<b>합 계</b>		<b>2,690,154,822</b>	<b>합 계</b>	<b>2,690,154,822</b>

##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의장: 국가대표훈련 등 여러 예산을 앞으로 더 논의를 해서 추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겠음. 회장 업무 인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진단 한 후에 수정하겠음.
- 김태정 이사: 우리협회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기금 과실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예산 조정 하면서 충분히 참고해주었으며 함. 그 당시에는 회장께서 출연금을 내지 않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방법뿐이 없었으며 직원들은 어찌됐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보장해줄 것을 당부함.

다. 논의 결론 : 예산 수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함.

#### IV. 기타사항

##### 1. 기타 안건

##### 1) 국제대회유치위원회 설치

###### 가. 주요내용

- 의장이 안건 발의

(불보오션레이스든지, 아메리카컵이라든지, 코리아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지금 이 멤버가지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이에 대하여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대회를 다시 부활시킨 다든지 또 새로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부터 해야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나. 참석자 주요발언

- 심영식 이사: 불보오션레이스급이나 클리퍼레이스급의 대회라면 언제든지 유치하는데 동의하며, 동시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국제대회를 만들어야함.

- 의장: 코리아컵이라든지 불보오션레이스 등 국제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우리의 한국형 국제대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를 만들고자 함.

###### 다. 논의 결론 : 가결

(폐회선언: 18시 30분)